

문서번호	건설관리과-436
결재일자	2016.3.8.
공개여부	부분공개

주무관	광고물담당	건설관리과장	안전시설담당	부구청장	구청장
윤현진	조인현	최준해	김화복	김병환	03/08 김영배
협 조	기획예산과장 언론홍보담당 자치행정담당		권용대 이대현 송재진		

- 주민과 함께 조성하는 깨끗한 성북 -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계획



건설교통국
건설관리과

- 주민과 함께 조성하는 깨끗한 성북 -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계획

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을 민·관 합동으로 정비하는 「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」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 추진 근거

-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4조, 제10조제1항,2항
-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의2
 -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·수거한 자에게 비용 지급
 -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
-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추진계획(서울시 도시빛정착과-2455 '16.02.24)

II 추진 배경

- 불법 현수막으로 서울의 가로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부각
 - 年2200만건... 不法전단·현수막이 뒤덮은 서울 — 조선일보('15.7.8)
 - 불법현수막 언론의 비판보도 — MBC8시 뉴스데스크('15.7.8)
-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부착이 용이한 불법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발생
거리 환경 저해

III 추진 필요성 및 개요

■ 현황 및 문제점

- 불법광고물(현수막) 현황 ⇒ 매년 증가 추세

년도별	2012	2013	2014	2015	비고
건수	46,397	120,279	105,228	130,663	

- 단속이 어려운 주말 및 공휴일에 불법현수막이 지속적 발생
 - 상습 불법광고 행위자들은 과태료 개의치 않고 조직적 불법게시
 - 정비인력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등 주변 정비의 한계
- (※광고물탑 정비 우선 순위: 간선도로변 현수막, 에어라이트, 입간판 및 민원사항 처리 등)

■ 추진 개요

- 사업기간 : 2016. 03 ~ 11(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)
- 사업대상 : 성북구 관내 게시된 불법현수막(일반형,족자형)

구분	일반형	족자형
기준	3㎡이상	3㎡이하
단가	2,000원	1,000원
사례		

- 사업내용 : 참여주민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오면 일정액 보상
 - 참여주민 자격 : 만20세이상 신체 건강한 성북 구민, 옥외광고협회 성북구지부회원
 - 보상지급 기준 : 불법현수막 장당 일반형 2,000원, 족자형 1,000원

- 추진방법 : 불법현수막 정비 참여주민 모집하여 민·관 합동 추진
- 사업비 : 45,000천원(서울시 특별교부금)
 - 수거보상비 : 40,000천원, 기타비용(홍보,교육,보험가입): 5,000천원

IV 세부 추진계획

■ 수거 참여자 모집 및 선정

- 모집인원 : 총 55명 내외(동장추천 40명, 공개모집 및 옥외광고협회 15명)
- 참여자격
 - 만20세이상 신체 건강한 성북 구민, 옥외광고협회 성북구지부회원
- 모집방법 및 선정 : 추천 및 공개모집
 - 추천 : 동장이 주민센터별 2명, 옥외광고협회 성북구지부장 추천
 - ▶ 추천기간 : '16. 03 .25한
 - 공개모집 : 선착순 15명
 - ▶ 모집기간 : '16. 03. 10. ~ 03. 25한(16일)
 - ▶ 접수처 : 건설관리과(광고물팀)
 - ▶ 접수방법 : 구비서류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
- 수거 참여자 권한 부여 (구청장 명의 단속증 수여 예정)

■ 불법현수막 정비·수행 방법

- 정비대상 : 성북구 관내 게시된 불법현수막(일반형,족자형)
- 수거참여자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 실시 (별도계획 수립)
- 정비단속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 집중 단속 실시
- 불법현수막 수거 시 공무원(정비책임자)지정 입회 후 실시
 - 동 주민센터 정비책임자 지정 후 수거 점검 및 지급신청서 관리

■ 구청 정비 및 관리 책임자

참가자	1조	2조	3조	4조	5조
권역	종암동 정릉1~4동 길음1~2동	안암동 보문동 돈암1~2동	성북동 삼선동 동선동	월곡1~2동	장위1~3동 석관동
정비·입회	윤현진	정주현	박석주	김한태	신수대

■ 수거보상금 지급

- 보상대상 : 성북구 관내 게시된 불법현수막(일반형,족자형)
※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(적용배제),법제처 해석사례(법제8조제4호 적용배제),정당현수막(현수막 관련법규)
- 보상금 단가 : 불법현수막(일반형 2,000원, 족자형 1,000원)
- 보상금 지급기준 : 1인/ 日10만원이내, 1인/ 月300만원이내
-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

불법현수막 수거	▶ 수거보상참여자가 불법현수막을 제출 ▶ 수거보상지급신청서 작성 (증빙사진 자료 동주민센터 및 구청 제출)
불법현수막 수거내용 확인	▶ 동주민센터 및 구청(정비책임자)가 광고물종류, 수량, 신분증, 확인 후 수거보상금 신청 접수증 교부
동별 결과보고	▶ 동주민센터에서는 수거보상지급신청서와 보상금지급 대상자 명단 매주 월요일 공문제출
보상금 지급	▶ 매주 금요일까지 참여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

■ 소요예산 : 금45,000천원(서울시 특별교부금)

- ※ 상반기-27,000천원(60%) 하반기-상반기 추진실적 차등교부
- 예산과목 : 간주처리
 - 수거보상금 : 22,000천원(불법광고물 정비,일반보상금,기타보상금)
 - 일반운영비(보험,교육) : 500만원(불법광고물정비,일반운영비,사무관리비)

■ 추진일정

- '16. 3. 10 ~ 3. 25 : 수거보상 참여자 공개(추천)모집
- '16. 3. 30 : 참여자 확정 및 보험가입
- '16. 3. 31 : 수거보상 참여자 교육
- '16. 4월중 : 참여자 수거보상제 시행

V 행정 사항

■ 수거보상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(2016. 3월)

- 수거보상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 협약서 날인

■ 수거보상제 예산 간주처리

■ 주민홍보 협조 : 성북소리, 관내 주간신문, 케이블 방송 등

■ 동 주민센터별 정비책임자 지정 제출 - '16. 3. 11한

■ 수거보상 참여자 모집(공개 및 추천모집)

■ 불법현수막 정비실적 등 제출(서울시)

- 수거실적·보상금 지급 및 수거현황, 과태료 부과현황

- 붙임
1. 수거보상제 사업 신청서 1부.
 2. 수거보상제 모집공고(안) 1부.
 3.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지급신청서 1부.
 4.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단속원증(안)1부.
 5. 업무협약서 1부.
 6. 불법현수막 정비실적 제출(양식) 1 부.
 7. 자치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현황자료 1부
- 끝.